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20925 취득세등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유한회사 가은에스엠씨
피 고	1.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
	2.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변 론 종 결	2018. 7. 19.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1. 원고에 대하여,

가.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2018. 2. 6.에 한 취득세 37,576,810원 및 지방교육세 7,515,36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나.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가 2018. 2. 6.에 한 취득세 72,416,870원 및 지방교육세 14,483,37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다.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2018. 2. 9.에 한 취득세 1,030,100원 및 지방교육세 206,010원의 환급경정거부처분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합병

1) 원고와 유한회사 아이에이엠알(2016. 12. 28. 상호를 유한회사 세현앤이에이아이로 변경하였다, 이하 '아이에이엠알'이라 한다)은 2016. 11. 8. 원고가 아이에이엠알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아이에이엠알을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7. 1. 10. 아이에이엠알을 흡수합병하였다는 내용의 흡수합병 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합병'이라 한다).

나. 취득세 납부

1) 원고는 부산 금정구 회동동 552-3 및 같은 동 209-6 소재 토지와 건축물을 이 사건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7. 3. 13. 피고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피고 금정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지방세법 제15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른 법인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피고 금정구청장에게 취득세 26,677,960원(본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26,495,150원, 가산세 182,810원), 11,141,500원(본세 11,081,660원, 가산세 59,840원) 합계 37,819,460원, 지방교육세 5,335,590원(본세 5,299,030원, 가산세 36,560원), 2,228,290원(본세 2,216,330원, 가산세 11,960원) 합계 7,563,880원을 납부하였다(피고들은 이 사건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증여계약에 의한 취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율을 산정하였다).

2) 원고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34 외 6필지를 위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2017. 3. 10. 피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피고 기장군수'라 한다)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피고 기장군수는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취득세 72,416,870원, 지방교육세 14,483,370원 총 86,900,24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7. 4. 20. 피고 기장군수에게 취득세 73,046,890원, 지방교육세 14,609,370원 총 87,656,260원(가산세포함)을 납부하였다.

3)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1124-2 팔레드시즈 101동 1705호를 위 합병을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7. 3. 9. 피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피고 해운대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피고 해운대구청장은 원고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1항과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를 적용하여 취득세 1,030,100원 지방교육세 206,010원 총 1,236,110원을 부과하였으며, 원고는 신고납부기한(2017. 3. 13.)을 경과한 2017. 5. 22. 피고 해운대구청장에게 취득세 1,061,000원, 지방교육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212,190원 총 1,273,19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다. 합병무효 판결의 확정

아이에이엠알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지이건설은 합병 후 존속회사인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7가합102548호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9. 29. 유한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원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상법 제522조 제1항, 제603조), 원고와 아이에이엠알이 합병계약서에 대해 사원총회 결의를 통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아이에이엠알의 이 사건 합병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7. 10. 13. 확정되었다.

라. 원고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1) 원고는 2017. 12. 28.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합병이 무효이므로 그 합병에 따라 양수한 부동산 취득에 대해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피고 금정구청장, 기장군수는 2018. 2. 6., 피고 해운대구청장은 2018. 2. 9. 각각 원고에게 '합병무효 판결은 판결 확정 전에 생긴 존속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합병무효 판결 이전에 존속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권리의무관계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아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 무효가 되지 않으며, 합병무효 판결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여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이 환급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8호증, 을가 제1~3호증, 을나 제1~4호증, 을다 제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합병에 관하여 합병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지방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에 대해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등기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이상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없으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상법 제190조에 의하여 합병무효 판결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회사와 제3자간의 권리의무도 아니다. 따라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한다. 그런데 증여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64. 11. 24. 선고 64누84 판결 취지,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취지 참조).

2) 위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병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각 부동산(위 1. 나.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취득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와 아이에이엠알은 이 사건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4조에서 '본 계약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와 아이에이엠알의 사원총회에서 승인을 받거나 총주주, 총 사원의 동의를 받아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합의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아이에이엠알은 합병계약서에 대해 사원총회 결의를 통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이를 이유로 합병무효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합병계약이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주식회사의 합병을 무효로 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주식회사의 합병 후에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취득한 재산은 합병 당사자의 공유로 하고,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가 부담한 채무는 합병 당사자들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으나(상법 제530조, 제239조 참조), 합병 당시 합병 당사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부채로서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남아 있는 것은 각각 본래의 회사로 복귀한다.

상법 제240조는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190조는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합병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를 파괴함으로써 발생될 법률관계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합병회사와 합병 후 새로 이해관계를 맺은 사원이나 제3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 형식상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을 거친 회사의 외부적 행위를 유효한 것으로 믿고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함으로써 거래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상법 제190조 단서에서 말하는 제3자는 합병 이후 합병회사와 법률행위 등으로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세채권은 합병 그 자체에 대하여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정채권으로 법률행위를 통해 취득한 채권이 아니므로 피고들을 소급효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제3자라고 볼 수 없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합병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애초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위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로 구분 과세되던 것이 취득세로 통합되었음) 제124조의 등록세 해당분 중 85%를 감면하고 남은 부분을 취득세 등으로 부과한 것인데, 위 등록세 부분은 취득과는 무관한 등기행위에 관한 것으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어 합병무효 판결로 인하여 환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010. 3. 31. 전면 개정된 이후 지방세법 제2장은 취득세를 규정하면서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을 '매매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제3장은 등록면허세를 규정하면서 제23조 제1호에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을 '재산권과 그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단서에서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을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을 제외하면서 법률상 유효한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기로 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등기의 원인이 무효인 경우라도 그 등기 자체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인 등록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또 지방세법은 제30조 제1항에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는 등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등이 사후적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 2010. 3. 31. 개정된 지방세법에서 취득세의 세율을 종래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산한 것으로 조정하고,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규정하여 두고 있기는 하지만,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진 경우까지 확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지방세법의 개정 취지, 관련 규정들의 문언과 체계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취득이라면 취득세의 과세 여부만 문제 될 뿐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은 아니고, 취득을 원인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후 등기의 원인이 무효로 밝혀져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새롭게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7두35684 판결).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문희

판사 이환기

판사 우경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 (2017. 12. 26. 법률 제15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3.「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다만,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과세물건이 합병 후에 제16조에 따른 과세물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또는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정의) 등록면허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나 등록은 포함한다.

가.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나. 제15조제2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선박만 해당한다)의 연부 취득에 따른 등기 또는 등록

제28조(세율)

① 등록면허세는 등록에 대하여 제27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5호의2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 해당 각 호의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보다 적을 때에는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 세율을 적용한다.

1. 부동산 등기

가. 소유권의 보존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나. 소유권의 이전 등기

1) 유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0

2)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15. 다만,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8로 한다.

제30조(신고 및 납부)

①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27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합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에 따라 양수(讓受)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재산이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같은 조에 따른 중과기준세율(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3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취득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제1호, 제29조, 제30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제2항, 제57조의3제1항, 제62조, 제63조제2항·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82조, 제84조제1항, 제85조의2제1항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8-10-18

■ 상법

제190조(판결의 효력)

설립무효의 판결 또는 설립취소의 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판결확정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40조(준용규정)

제186조 내지 제191조의 규정은 합병무효의 소에 준용한다.

제522조(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합병계약의 요령은 제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승인결의는 제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제603조(준용규정)

제232조, 제234조, 제235조, 제237조 내지 제240조, 제443조, 제522조제1항·제2항, 제522조의2, 제523조, 제524조, 제526조제1항·제2항, 제527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29조의 규정은 유한회사의 합병의 경우에 준용한다. 끝.